

Apple 협력업체 행동 수칙

Apple 은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윤리 강령을 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pple 협력업체가 Apple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언제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업무에 힘써야 합니다. Apple 은 협력업체에게 Apple 협력업체 행동 수칙(이하 "수칙") 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수칙은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준거 법률 준수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표준과 법률 요건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보호, 윤리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Apple 이 협력업체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간략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Apple 은 협력업체의 수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악의 경우계약 해지까지 포함해 Apple 과 협력업체의 사업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본수칙은 Apple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자회사 및 계열사를 비롯해 Apple 에게 제품 또는서비스를 공급하거나 Apple 제품에 사용할 제품 또는서비스를 공급하는하도급업체(별칭 "공급업체")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Apple 은 본 수칙 준수에 대한 기대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한 세부 표준(별칭 "표준")을 유지합니다.

노동 인권

Apple 은 공급망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로자는 최고의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되어야 하며, Apple 협력업체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차별 금지

협력업체는 신규 채용 및 기타 고용 업무 시 연령, 장애, 민족, 성별, 결혼 여부, 국적, 정치 성향,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노조 가입 또는 국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태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업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거나 작업장 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테스트나 의료 검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가혹 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언어 학대 및 폭력, 정신적 폭력, 정신 및 신체적 강요, 성희롱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비자발적 노동 금지와 인신매매 방지

협력업체는 모든 작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을 사고파는 행위나 노예 노동, 강제 노동, 담보 노동, 계약 노동 또는 수형자 노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노동이란 위협, 강제, 강요, 유괴 및 사기를 비롯해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운송, 은닉, 채용, 이전, 수용 또는 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근로자의 신분증이나 여행 서류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내 이동이나 회사 시설 출입에 대해 부당한 제약 조건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주나 그 대리인은 근로자에게 취업을 이유로 채용 수수료나 기타 유사한 수수료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수수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제 3 의 고용 기관

협력업체가 제 3 의 고용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과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노동 금지

협력업체는 적어도 15 세, 해당 법정 최소 고용 연령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중 가장 높은 기준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만 고용해야 합니다. ILO 최저연령협약 138 호 6 조에 따른 교육 목적의 합법적인 작업장 견습 프로그램이나 ILO 최저연령협약 138 호 7 조에 따른 가벼운 노동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보호

협력업체는 ILO 최저연령협약 138 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건강, 안전, 심리를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정 최소 고용 연령보다는 많지만 18 세보다 어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나 야간 작업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근로자 보호

협력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 근로자의 기록들을 적절하게 보관 유지하고, 관련교육기관에 대한 성실한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하며 학생 근로자 권리 보호를 통하여 학생 근로자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주중 근무 시간은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60 시간으로 제한되며, 근로자는 긴급 또는 예상 밖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7일 중 1일을 휴무해야 합니다. 정규 근무 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협력업체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임금과 수당

협력업체는 최소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법 및/또는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정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초과근무 근로자에게는 법정 할증 요율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 밖에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조와 급여 기간을 알려주고,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 삭감을 징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직 및 외주 인력 사용은 현지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이 서로 결사하여 원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가 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섭, 차별, 보복 또는 가혹 행위 없이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충 신고 시스템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 임원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야합니다.

보건 안전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는 Apple 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업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 바람직한 보건 안전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을 사업에 편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불건전 작업 환경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허가서

협력업체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허가서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리

협력업체는 위해 요소 제거, 대체, 엔지니어링 제어 및/또는 관리 제어 및/또는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 순위에 맞게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 위해 요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대비 및 대응

협력업체는 잠재적 긴급 상황을 식별 및 평가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대비해 협력업체는 긴급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여 인체 및 동식물과 환경, 그리고 토지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고 관리

협력업체는 근로자가 보건 및 안전 사고 또는 위기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러한 보고를 조사,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 계획을 이행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작업 및 생활 조건

협력업체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과 음용수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식사, 취사 및 보관 시설은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또는 제 3 자가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며, 그 생활 공간 역시 크기가 충분해야 합니다.

보건 안전 정보 공개

협력업체는 작업장 보건 안전 교육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

Apple 은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환경 책임을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업무 개발, 이행 및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환경 허가서와 보고

협력업체는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서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허가서 및 규정의 보고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 물질 명세서

협력업체는 제조하여 Apple 에 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Apple 의 규제 물질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관리

협력업체는 유해 물질을 식별, 관리,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합니다.

비유해 폐기물 관리

협력업체는 비유해 폐기물을 식별, 관리,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합니다.

폐수 관리

협력업체는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식별,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 처리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수 관리

협력업체는 우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불법적으로 폐수가 우수 배수관, 공설 급수 또는 공공 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기가스 관리

협력업체는 대기 유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식별하고, 관리 및 저감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또한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정기적으로 목표를 정량화하여 설정한 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보존, 청정 에너지 사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저감해야 합니다.

경계 소음 관리

협력업체는 사업장 소음을 구분, 제어 및 모니터링하여 경계 소음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원 소비 관리

협력업체는 정기적으로 목표를 정량화하여 설정한 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보존, 재사용, 재활용, 대체 에너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화석 연료, 물, 유해 물질 및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윤리

Apple 은 기업의 윤리 강령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관계, 업무, 조달 및 작업 등 모든 기업적 요소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협력업체는 각자의 공급망 내에서 관련 광물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분쟁, 최악의 아동 노동 착취,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또는 만연한 성폭력과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연관된 지역, 보건 및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고위험 활동과 연관이 있는 지역 등에서 관련 광물이 조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물 가공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실성

협력업체는 부패, 착취, 횡령 또는 뇌물 등으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 관련 국제부패방지협약을 포함해 사업 시행 국가에서 적용되는 모든 부패 방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협력업체는 사업 활동, 노동, 보건 안전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위조 또는 허위 조작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업체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이나 노하우 역시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와 익명 불만 신고

협력업체는 관리자나 근로자가 작업장 불만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 비밀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공헌

협력업체는 사회 및 경제적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C-TPAT

협력업체가 Apple 제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www.cbp.gov) 또는 동일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설립한 기타 웹 사이트의 C-TPAT(대테러 민관 협력 프로그램)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

Apple 은 건전한 경영 시스템과 의지야말로 공급망의 사회적, 환경적 건정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Apple 협력업체는 본 수칙 및 모든 하위 표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본 수칙과 법률을 준수하고, 해당될 경우 관련 작업 위험을 식별 및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 성명서

협력업체는 사회 및 환경 책임, 윤리 강령, 지속적인 개선을 엄수한다는 공약의 기업 성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업 성명서는 모든 사업장에 현지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경영진 책임과 의무

협력업체는 경영 제도의 이행과 주기적 검토를 담당할 기업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진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준수 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지닌 CSR 또는 지속 가능성 대표도 임명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협력업체는 작업과 관련하여 노동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기업 윤리 및 준수 위험군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및 유지하면서 각 위험군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식별된 위험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과 목적, 이행 계획 및 방안

협력업체는 서면화된 표준, 성과 목적, 목표, 그리고 목적에 대한 정기적 성과 평가서를 포함한 이행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 및 평가

협력업체는 자사의 사업장 시설 및 운영 과정 등은 물론이고 Apple 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업체 및 제 3 의 협력업체의 사업장 시설 및 운영 과정까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본 수칙과 법률 준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Apple 을 위하여 혹은 Apple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Apple 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Apple 및 Apple 이 지정한 제 3 자가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사업장 시설 및 운영 과정 등과 협력업체의 하도급 업체 및 제 3 의 협력업체의 사업장 시설 및 운영 과정 등을 평가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문서와 기록물

협력업체는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와 기록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및 정보 전달

협력업체는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하여 올바른 정책 및 절차 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사의 지속적인 개선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 업무, 정책 및 기대 목표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이하 협력업체(들) 및 고객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본 수칙 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교정 조치 계획

협력업체는 내외부 감사, 평가,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식별된 사업장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교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Apple의 협력업체 책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apple.com/kr/supplier-responsibility 를 참조하십시오.

본 수칙은 이전에 EICC(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라고 불렸던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 8000, ILO의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및 OHSAS 18001 등 업계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본 수칙은 제3자의 새로운 또는 추가 권리를 창출하기 위한 의도는 없습니다. 버전 4.4.

© 2018 Apple Inc. 모든 권리 보유. Apple 및 Apple 로고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그 밖에 이 문서에 언급된 명칭은 제3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